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38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총괄의견	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5
2. 조문별 검토	6
가. 총칙	6
나. 기념사업의 시행 및 추진기구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주철현 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7. 3.

다. 회부연월일 : 2025.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난을 극복한 위인으로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추앙받고 있는 인물로,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생애, 사상과 업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교육 및 기념사업은 미흡하고, 지역이나 민간 차원에서 기념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이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화하여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교육하고 이를 전파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유산청장은 이순신기념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이순신기념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이순신기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둠(안 제7조).
- 마. 국가유산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총괄의견

현재 전국에 산재한 이순신 장군 관련 국가지정유산(19건)¹⁾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순신 장군 관련 연구·조사 및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전국적으로 약 46개에 이르는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 박물관·연구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순신 장군 관련 지역 축제를 산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등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이순신 장군 관련 지역축제 현황

연번	지 역		명 칭
1	충남	아산시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2	경남	통영시	통영 한산대첩축제
3		남해군	이순신 순국제전
4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제
5		창원시	진해군항제
6		여주시	여수 거북선축제
7	전남	해남군, 진도군	명량대첩축제
8		장흥군	회령포 문화축제

1) (국보)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여수 진남관, 통영 세병관 등 3건, (보물) 이순신 유물 일괄, 해남 명량대첩비, 여수 타루비 등 6건 (사적) 아산 이충무공 묘, 남해 충렬사, 여수 충민사 등 10건

이에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화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려는 것으로 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봄.

다만, 국가유산청은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이 현재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인 현충사관리소의 소관 업무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중복성과 정책 혼선의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경우 다른 역사적 위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제정안의 발의 취지 및 의의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제명으로 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제1조(목적)	국가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교육하고 전파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국가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교육하고 전파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순신기념사업 조성·지원 시 지역간 협력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제2항), 이순신 장군의 업적 연구·교육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해야 함(제3항)
제5조(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유산청장은 이순신기념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제6조(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순신기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둔(제1항)
제7조(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	이순신기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둔(제1항)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안의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제3조)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교육하고 전파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이순신기념사업”이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연구·교육·전파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교육하고 전파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조성·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시설과 기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 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 및 정신과 관련된 연구·교육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이순신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순신기념사업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총칙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에 관련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1조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파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제정안의 목적을, 제2조는 이순신기념사업의 정의를,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형식임.
- 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특정 인물 선양을 위한 개별법 제정은 세종대왕, 안중근 등 다른 역사적 위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또한,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기념사업의 시행 및 추진기구(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념사업의 시행 및 추진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가유산청장은 이순신기념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순신기념사업의 목적 2. 이순신기념사업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이순신기념사업의 거점지구 위치 4. 그 밖에 이순신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이순신기념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1.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관계 시·도지사가 민간전문가로 추천하는 사람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를 이순신기념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 ①이순신기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순신기념사업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4.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추진단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국가유산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순신 장군 관련 민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5조는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념사업의 통합적·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 제6조는 기념사업의 추진기구로 국가유산청 소속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다수의 참여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원활히 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안 제7조는 국가유산청에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두어 기념사업 전담기구로서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국가유산청은 이순신기념사업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고, 문화유산위원회에 따라 심의될 수 있으므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적으며, 추진단의 경우에도 현충사관리소가 이미 설치되어 별도의 기관 설치는

불요하고, 이에 따라 현충사관리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파견 등의 요청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안 제6조의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정책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²⁾,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은 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하부조직으로 소속기관 등은 「정부조직법」³⁾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하며,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

2)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3)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③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①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계급별·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안에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9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

④「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외한다)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부령(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훈령·예규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직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정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